파주시공고 제2025-1602호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변경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(영업정지)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5. 5. 22.

파 주 시 장

1. 공고내용

상호 및 대표자	처분업종 (등록번호)	소재지	변경내용	변경사유	변경근거
㈜케이비건설 (백0영)	지반조성・포장공사업(파주24-가-09) 상・하수도설비공사업(전북군산2012-11-02)	경기도 파주시 순못길 27 (다율동)	- 당초 : 영업정지 5개월 (2025.04.15. ~ 2025.9.14.) - **변경 : 영업정지 4개월 15일 (2025.04.15. ~ 2025.8.30.)**	건설업 교육 수료	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[별표6] 1.마.4)
케이비이엔씨(주) (안0탁)	조경식재・시설물공사업(파주20-16-02) 도장・습식・방수・석공사업(충북제천08-05-02)	경기도 파주시 순못길 29 1층상가 102호 (다율동)	- 당초 : 영업정지 4개월 (2025.04.15. ~ 2025.8.14.) - **변경 : 영업정지 3개월 15일 (2025.04.15. ~ 2025.7.30.)**		
세양건설(주) (기0광)	지반조성・포장공사업(경기97-17-171)	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1 (금촌동)	- 당초 : 영업정지 4개월 (2025.03.20. ~ 2025.7.19.) - **변경 : 영업정지 3개월 15일 (2025.03.20. ~ 2025.7.04.)**		

2. 기타사항

가.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(KISCON)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.

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